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90호
- 나. 제안자 : 신언근의원외 104명
- 다. 제안일자 : 2015년 11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7일

2. 주 문

-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할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함

3. 제안이유

- 2018년부터는 현행 법률상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음.
- 최근 로스쿨 제도에 대해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불투명한 입학 전형 등 개선요구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사법고시와 상생관계에

대한 목소리가 일고 있음.

- 모든 국민은 빈부, 학력, 배경,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법시험 제도가 존치할 것을 결의함.

4. 이송처 : 국회, 법무부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결의안의 개요

- 결의안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12월 31일 완전히 폐지될 예정인 기존 사법시험의 존치를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하는 것임.

나.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 등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의 학식과 능력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 제도는 1947년 조선변호사 시험으로 실시되던 것을 1963년 사법시험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오랜시간 유일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 운영되어 오던 사법시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윤리 교육의 필요성, 법률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목적에 따라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음.

- 관련법에 따라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2017년 12월 31일에 전격적으로 폐지되며, 2018년 이후에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법조인이 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로스쿨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으로, 법률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본과 졸업자를 전형하여 3년제의 로스쿨에서 시행하는 미국식 제도를 상당부분 차용하고 있음.
- 2009년 3월 전국적으로 인가받은 25개 대학¹⁾에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으며 로스쿨의 총 정원은 2,000명이며, 현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총 정원의 75% 정도가 매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있음.

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비판과 사법시험 존폐

- 로스쿨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임.

1)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5개 권역(서울권·대전권·대구권·부산권·광주권)으로 나누어 할당하였음(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 현재 로스쿨은 주로 법학적성시험(LEET)와 학부성정, 공인영어점수(토익, 토플, 텡스), 면접 등을 종합해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부성적이나 영어점수 등 지원자의 스펙에 차이가 거의 없고, 적성시험도 학원을 통해서 공부한 결과 성적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에 따라 면접이 당락을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
- 이런 학생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이 사회 고위층이나 재력가 특히 법조인 자녀들의 로스쿨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실제 국내 일간지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5,074명 가운데 61%가 서울에 거주하며, 강남 3구 거주비율은 27.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음²⁾.
- 이와 함께 평균 2,000만원이 넘는 로스쿨의 1년 등록금에 ‘돈스쿨’이라는 신조어까지 양산할 정도로 비싼등록금 때문에 로스쿨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비싼 등록금이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을 막는 진입장벽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³⁾.
- 이와 같은 다양한 비판에 따라 로스쿨 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높은

2) 주간동아(2014.3), ‘위기의 로스쿨’

3) 인터넷 사이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따르면 로스쿨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09년 935명에서 2010년 2,040명, 2011년 2,89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로스쿨 등록금이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음.

- 로스쿨에 대한 반감과 비판이 쏟아지면서 국회에는 사법시험의 존치 시한을 폐지하고, 사시와 로스쿨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20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되어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여야의 여러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에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⁴⁾.
- 로스쿨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행 로스쿨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법시험의 존치가 법조계의 명문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로스쿨의 지방 분산 배치와 타 대학 출신의 일정비율 선발, 지방 국립 로스쿨의 정원 20% 지역인재 우선선발 등으로 인해 지방경제를 살리고 지역인재 등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존폐 문제는 시험을 준비하는 당사자들 외에도 법률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시장 개방과 같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 등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4) 법무부는 12월 3일 차관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9월 국민 1,000명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85.4%가 사시존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령개정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해 2021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